

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77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6. 7. 8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

번호	시설명	소재지	시설현황	위탁기간	수탁자 선정방식	예산 수반
	계		11개 사업			
1	김포골드벨리 중앙체육공원	양촌읍 학운리 4288	축구장, 육상트랙	2026. 10. ~ 2029. 12. (3년 3개월)	공모	여
2	서암생활 체육공원	통진읍 검암2로 55	게이트볼장, 테니스장(5면), 풋살장(2면), 족구장(3면)	2027. 1. ~ 2029. 12. (3년)	공모	여
3	전호야구장	고촌읍 전호로 76	리틀야구장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4	학운야구장	양촌읍 학운리 4447	야구장, 배드민턴장(1면), 체육공원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5	전호 배드민턴장	고촌읍 금포로 129	배드민턴장 3.5면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6	파르코스 테니스장	고촌읍 신곡로 114-13	테니스장 8면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7	양곡 테니스장	양촌읍 양곡리 488-1	테니스장 2.5면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8	금릉정 (국궁장)	걸포로 76	국궁장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9	태산정 (국궁장)	하성면 하성로 585	국궁장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10	대호정 (국궁장)	대곶면 울생리 219-2	국궁장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11	신곡체육시설 (족구장)	고촌읍 신곡리 182-5	족구장 2면	2027. 1. ~ 2029. 12. (3년)	성과평가 후 협약 갱신 또는 공모	부

나. 수탁자 :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·법인 등

다. 위탁방법 : 민간 위탁

라. 위탁내용 :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

마. 위탁사무 : 공공체육시설 운영

-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·운영

- 시설 사용료,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

바. 지원계획

- (관리자)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

- (위탁운영비) 시설 유지·보수·관리, 공공운영비 등 지원

3. 관계법령

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나. 「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」 제20조(위탁관리)

다.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예정금액 : 금1,449,620천원

나. 비용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2026년 10월~12월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		33,238	460,656	471,939	483,787	1,449,620
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	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	인건비	9,770	41,035	43,086	45,240	139,131
		시설운영비	23,468	93,872	93,872	93,872	305,084
	서암생활 체육공원	인건비	-	184,649	193,881	203,575	582,105
		시설운영비	-	141,100	141,100	141,100	423,300

소관 실·과·소		체육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체육과장 김 상 영
	팀장 직위·성명	체육시설팀장 임 풍 석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이 수 현(☎2585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20조제3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필요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운영비, 관리자 인건비, 위탁시설 유지·보수비 반영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		2026년 10월~12월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		33,238	460,656	471,939	483,787	1,449,620
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	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	인건비	9,770	41,035	43,086	45,240	139,131
		시설운영비	23,468	93,872	93,872	93,872	305,084
	서암생활 체육공원	인건비	-	184,649	193,881	203,575	582,105
		시설운영비	-	141,100	141,100	141,100	423,3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○ 예산법무과 협의필

※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은 2026년 예산 기편성되었으나, 재계약 기간이 2026년 중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○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교육문화국 체육과 과장 김상영 팀장 임풍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계
세 입		3,500	94,000	94,000	94,000	285,500
김포골드벨리 중앙체육공원	이용료	3,500	14,000	14,000	14,000	45,500
서암생활 체육공원		-	80,000	80,000	80,000	240,000
세 출		33,238	460,656	471,939	483,787	1,449,620
김포골드벨리 중앙체육공원	인건비	9,770	41,035	43,086	45,240	139,131
	시설운영비	23,468	93,872	93,872	93,872	305,084
서암생활 체육공원	인건비	-	184,649	193,881	203,575	582,105
	시설운영비	-	141,100	141,100	141,100	423,3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,500	94,000	94,000	94,000	285,500
	지방세수입					
	세외수입	3,500	94,000	94,000	94,000	285,500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[제5조제1항](#) 및 [제6조](#)에 따른 체육시설과 [제7조제1항](#)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

제20조(위탁관리)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[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·법인이나 개인](#)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, 2023.8.9.>

② 삭제 <2020.03.25.>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., 2022.9.21.>

④ 삭제 <2020.03.25.>

□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20.02.14.>